

공고

기안용지 중소기업

문서번호 1332- (이전번호 248) ; 제정규칙 2 조 2 항
국장 권경수

처리기관

시행일자

보존년한

보	공업과장	법무과장 (공공안결재)
조	중소기업계장	시민과장
기		문선관대계장
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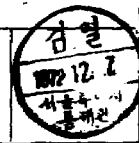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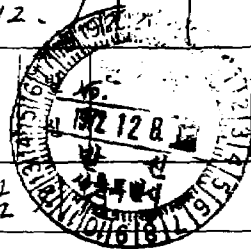
기안책임자 반상준 72. 12. 1

경유신조 각안참조

제목 중소기업육성 재정자금

제1안 내부결재

1. 상공부고시 제 8290호 및 동 개정고시 제 8550호, 제 8989호, 제 9337호 (중소기업육성 재정자금 운용요강)에 의하여 지방장관이 주관으로 집행하는 중소기업육성 재정자금인 수출품생산지령업체 지원자금, 수출유통지원자금 및 시흥근대화 지원자금을 다음요령으로 집행하고자 동 요령을 봉고코자 함이다.



0201-1-8A

1969. 11. 10. 승인

1-1 190x268x408/4

252

131.

• 1-2

2. 집행요령

공고안심사	1972. 12. 6	제 223호
심사자	발령처	계장
홍		

서울특별시공고제

호

수출품생산지정업체지원자금, 수출품화산업체지원자금 및 시설근대화지원자금 집행요령 공고

상공부고시 제 8290호 및 등 개정고시(제 8550호, 제 8989호, 제 9337호) 중 중소기업 육성 재정자금 운용요강에 의하여 수출품생산지정업체지원자금, 수출품화산업체지원자금 및 시설근대화지원자금 집행요령은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

1972. 12. 7

서울특별시장

1. 지원내용, 용자대상업체종 및 품목, 지원대상업체자격요건.
별표 1과 같음.

2. 용자신청절차

이 요령에 의한 용자를 받고자 하는 자는 소정서식
의 용자신청서 1통을 서울특별시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용자대상업체 선정절차

가. 시장은 신청인으로부터 접수한 용자신청서류 중
다음절차를 거쳐 용자대상과 용자금액을 선정
하고 상공부장관과 중소기업은행장 및 해당업체
에 보고(통보)한다.

나. 실태조사 (소정 ~~서식~~ ^{용자표에} 의한)

(2) 우선순위 결정 (소정평점포에 의한)

(3) 서울특별시 재정자금 융자대상선정 심의위원회에
융자대상선정과 융자금액 책정.

나. 전항에 의한 융자대상업체 선정은 원칙으로 하되
지원재원의 부족으로 융자대상으로 선정되지 못하
았거나 융자대상업체 선정은 할수 없었던 때에는
그 융자신청서류를 차회이 융자대상선정 대상에
포함되지할수 있다.

4. 이 요령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상무부고시 제 829호
및 동개정령(제 855호, 제 898호, 제 933호)에 의한다.

부 칙

1. 이 요령은 공인한날로부터 시행한다.
2. 이 요령 실시와동시 서울특별시 공인제 203호(22.9.22)
및 동 개정공인제 217호(22.9.22)는 폐지한다.

공

별표 1.

구분	수출품생산지정업체 지원자금	수출특화산업지원자금	시설근대화지원자금	비고
1. 지원내용				
가. 자금구분	시설자금	시설자금	시설자금	
나. 지원한도	20,000,000 원 이내 (기 지원 대출잔액 포함)	20,000,000 원 이내 (기 지원 대출잔액 포함)	10,000,000 원 이내 수출산업인 경우 20,000,000 원 이내 (기 지원 대출잔액 포함)	
다. 이자	년리 10%	년리 10%	년리 10%	
라. 용자기간	8년 이내	8년 이내	8년 이내	
2. 용자대상업종 및 품목	상공부공고제 6612호 및 등 개정공고 제 6740호, 제 7165호에 의한 제1 및 제2 유형 해당 품목	상공부고시 제 8263호로 지정한 업종 및 품목	상공부공고제 6612호 및 등 개정공고 제 6740호, 제 7165호에 의한 제1 및 제2 유형 해당 품목	
3. 용자대상업종 및 자격요건	가.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수출품생산지정업체로서 노후시설(건물, 기계)의 개제, 보완 및 시설(건물, 기계)의 확장을 착수하고 있거나 동 시설계획이 확정된 자. 나. 서울특별시에 공장등록을 필하고 중소 기업형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협동조합에 가입을 필한 자. 단, (1) 협동조합이 설립되지 아니하여 조합 가입이 불가능한 영종생산자 및 협동조합법 시행령제 4조 (업종분류) 별표의 분류에	가. 수출특화산업업종 생산업체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1) 기초업체로서 노후시설(건물, 기계)의 개제, 보완 및 시설(건물, 기계)의 확장을 착수하고 있거나 동 시설계획이 확정된 자 2) 신규발주업체로서 공장부지를 확보하고 생산시설(건물, 기계)을 착수하고 있거나 동 시설계획이 확정된 자 나. 서울특별시에 공장등록을 필하고 중소 기업형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협동조합에 가입을 필한 자 (신규발주업체는 시설완료를 동시에 공장 등록 및 협동조합 가입 이행 각서 제출자) 단, (1) 협동조합이 설립되지 아니하여	가. 수출상품 수입대체품, 생필품 생산업체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1) 기초업체로서 노후시설(건물, 기계)의 개제, 보완 및 시설(건물, 기계)의 확장을 착수하고 있거나 동 시설계획이 확정된 자 2) 신규발주업체로서 공장부지를 확보하고 생산시설(건물, 기계)을 착수하고 있거나 동 시설계획이 확정된 자. 나. 서울특별시에 공장등록을 필하고 중소 기업형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협동조합에 가입을 필한 자 (신규발주업체는 시설완료를 동시에 공장 등록 및 협동조합 가입 이행 각서 제출자) 단, (1) 협동조합이 설립되지 아니하여	

해당되지 아니하는 업종생산자는 협동조합가입자가 아니라도 융자대상으로 할수 있으며
 (2) 섬유류생산자중 섬유시설등록요령(상공부공고제 6238호, 7.1.1.6)에 의거 등록을 요하는자는 동요령에 의거 등록된 업체라야 한다.

조합가입이 불가능한 업종생산자 및 협동조합법시행령제 4조(업종분류) 별표의 분류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업종생산자는 협동조합가입자가 아니라도 융자대상으로 할수 있으며
 (2) 섬유류생산자중 섬유시설등록요령(상공부공고제 6238호, 7.1.1.6)에 의거 등록을 요하는자는 동요령에 의거 등록된 업체라야 한다.

조합가입이 불가능한 업종생산자 및 협동조합법시행령제 4조(업종분류) 별표의 분류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업종생산자는 협동조합가입자가 아니라도 융자대상으로 할수 있으며
 (2) 섬유류생산자중 섬유시설등록요령(상공부공고제 6238호, 7.1.1.6)에 의거 등록을 요하는자는 동요령에 의거 등록된 업체라야 한다.

별표 2. 용자대상업종 및 품목

수출입산자정업종지원. 자선근대회지원			수출특화산업지원	
업종	제1유형	제2유형	업종	품 목
기 계	38	168	생사	생사
수송용기계	4	192	인삼 및 인삼가공품	인삼주
전기기기	24	69	견직물	견진물
금 속	32	22	저마제품	남방샤스. 카헨. 카바류. 와이샤스.
도석. 유래제품	26	1		췌라. 외의류. 저마지.
화 학	40			(저마제품에 한함)
고무제품	14		벼지류	벼지
저지. 동제품	12		도자기및 타일	가정용도자기제품
섬 유	89	1		(꽃병. 대접. 접시등)
식 료품	28		공예품 (신변보호포함)	면조화. 지도화. 진주. 인조진주.
목재및가죽제품	25			진주모패. 갑각커석및 커금속제품.
잡 화	153			신변용인조세화류. 프라스틱및 인조진주제
과학적계측 및 조정용기계기구	10	6		각종부조치류. 이상식제품. 완윤
				시계밴드. 벳지류 및 메달류.
				박클류. 스텝키류. 빛및머리장식류.
				족시품. 목시품. 프라스틱류제품.
				완조제품. 단추류. 핸드백류.
				진유공예품. 바전필기. 모뎀모피제품.
				흡연우주류

제2안
수신 상공부장관 (참조 중소기업계획담당관)
중소기업은행장 (참조 영업부장)
제목 공고송부
당시공고제 호 (수출품생산지정업체지원자금, 수출특화 산업지원자금 및 시설근대화지원자금집행요령)를 송부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서울특별시공고제 호1부 끝
제3안
수신 수신처참조
제목 공고송부
당시공고제 호 (수출품생산지정업체지원자금, 수출특화 산업지원자금 및 시설근대화지원자금집행요령)를 송부하니 업무에 참고할 것이며 안내 대상업체에 공고 송부 등 청제할 주지로서 융자신청이 누락이 없도록 조치할 것, 첨부 서울특별시공고제 호1부 끝
수신처 서정 1-9
서울특별시중소기업협동조합이사장 (14개조합)

제 4 안

수신 공보실장

발신 공판과장

제목 시보게재 의뢰

당시 공판지 호는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서울특별시 공판지 호 113 끝